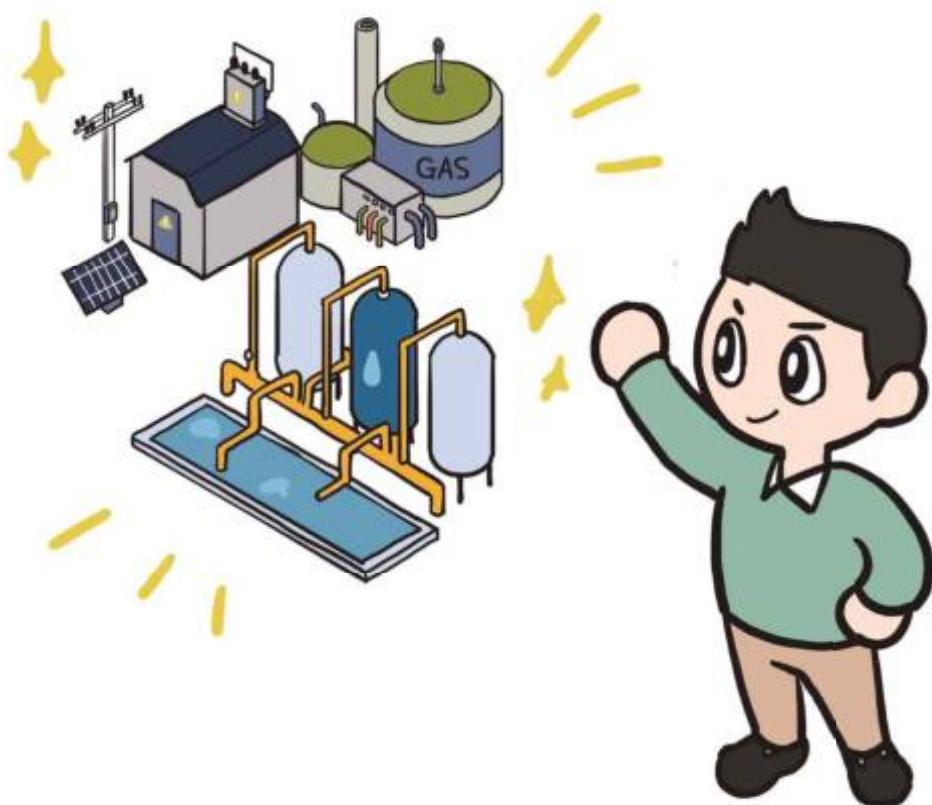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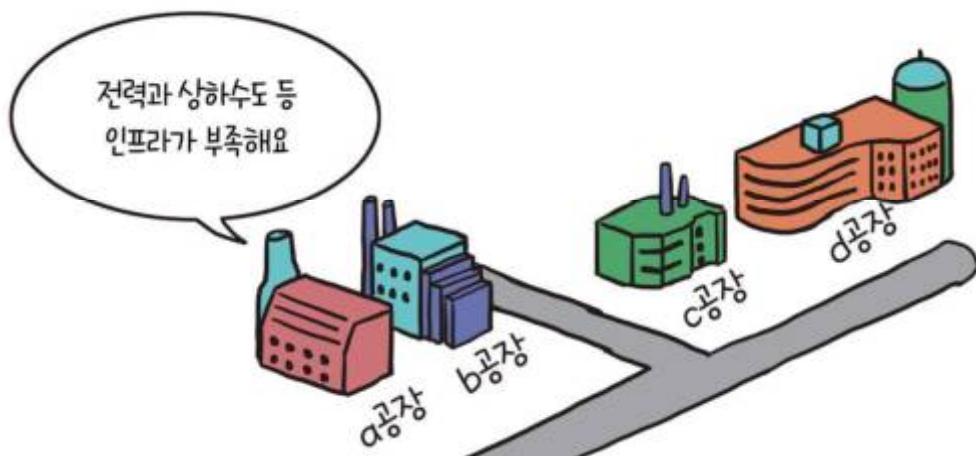
인프라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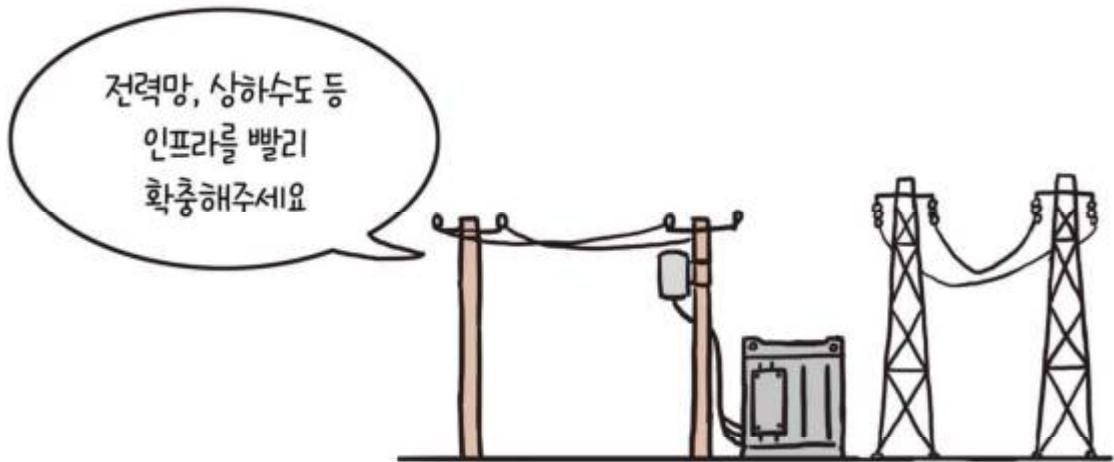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기업인 A사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a,b,c,d를 순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 하지만 A사는 공장의 시운전 시점에 전력과 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준공되는 a,b 공장의 경우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이 지연되면서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렵거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하수 기반공사 완공시점이 공장 시운전보다 늦어져 임시 상하수 관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① a공장의 경우 '23년 10월에 20MW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24년 2월에 가능하고 '24년 9월에 상하수도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3개월 늦은 '24년 12월에 가능하며
② b공장의 경우 시운전이 예정된 '25년 1월에 15M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 증설 예정부지에 전력망, 상하수도 등 필요한 기반 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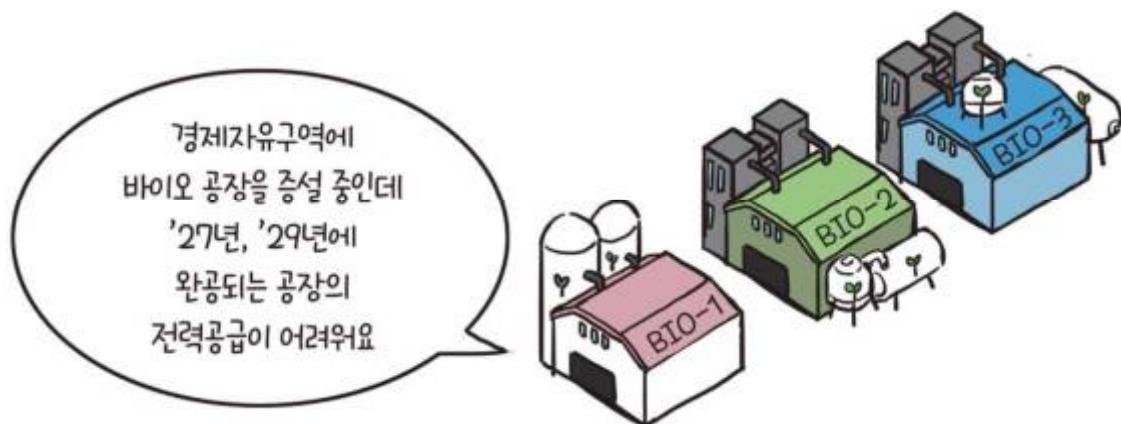
- '23년 2월 28일 산업부는 해당 경제자유구역청, 한국전력, A사와 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 간담회 결과, a공장에 대해 전력공급의 경우 '23년 10월 주변 다른 변전소를 통해 20MW 임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과 전력사용계약을 협의했고, 상하수도의 경우 '24년 9월까지 조기 구축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 또한 b공장에 대해 '23년 8월 28일 b공장의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서 한국전력과 '24년 3월 6일 타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전력공급에 합의한 후 '24년 7월 22일 전력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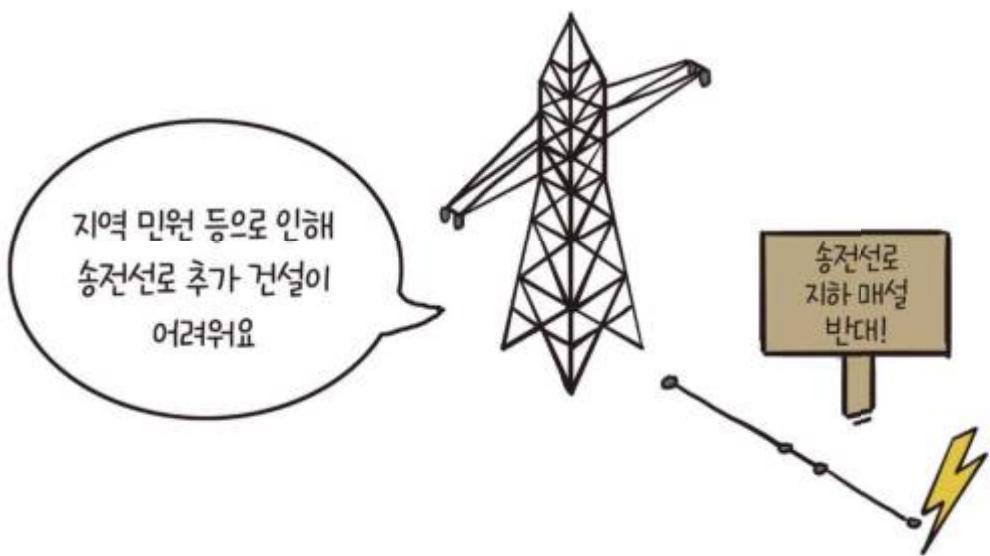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 기업인 B사 역시 A사와 동일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 공장 1,2,3을 순차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 B사의 1공장은 '25년 준공 예정으로 1공장의 전력공급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지만 '27년 완공하는 2공장과 '29년 완공하는 3공장은 적기에 전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B사는 한국전력에 '23년 2월 24일 1공장의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4월 27일 2,3공장의 수전 예정을 통지하자 이에 한국전력은 6월 13일 1공장 전기 사용을 허가하였지만, 지자체에서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생활전자파 및 지하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우려 민원 등으로 변전소 준공이 어려워 2,3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변전소 준공이 추가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과 민관 합동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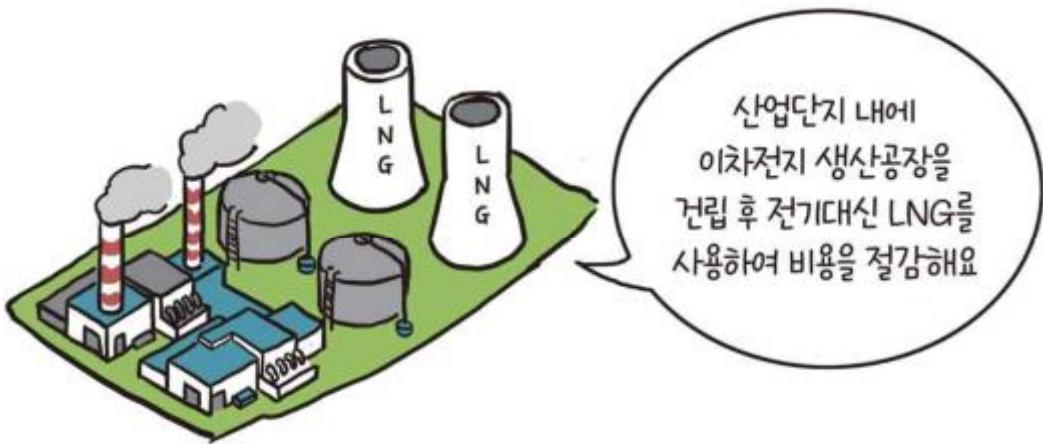
- 산업부는 해당 구역의 변전소 준공 지역으로 B사에도 동일하게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 한국전력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력 공급 협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지반 침하 및 전자파 발생 우려가 낮은 신도시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마련하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3년 6월 27일 지자체는 해당 특화단지를 조건부로 지정하고, 9월 인허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11월 5일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추가적인 공사 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송전선로 사업 인허가 및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C사는 산업단지 내에 이차전지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5년 이후부터는 C사의 전기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기 대신 LNG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하지만 지역기업들에는 '28년 이후 LNG가 공급될 예정으로 C사가 공장 가동 시점부터 LNG를 사용하려면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C사는 산업부에 공장 준공 전에 LNG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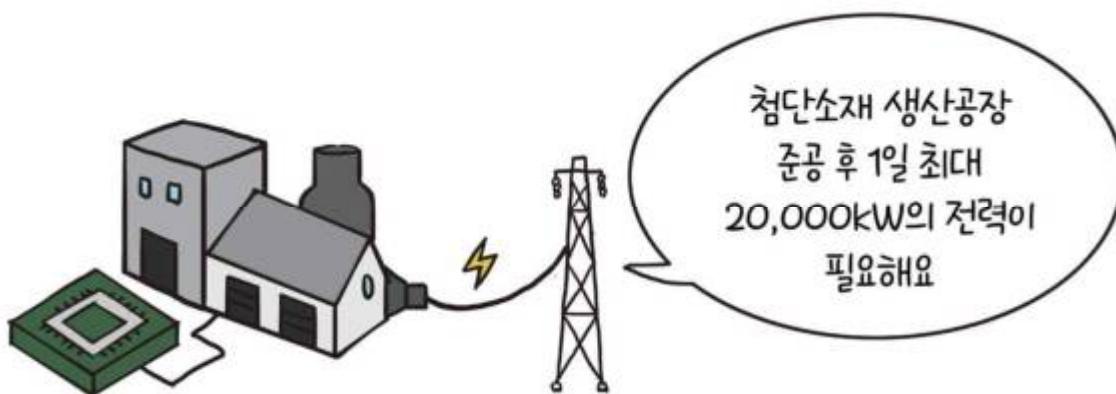
- LNG 가스 공급 담당과인 가스산업과가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C사 생산공장에 대한 가스 공급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산업부는 '23년 3월 14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에게 파이프라인 조기 설치 관련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해당 군청에 도로관리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군청은 C사가 제출한 경관심의 서류를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 1일 도로심의와 6월 5일 경관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6월 30일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는 LNG 공급 파이프라인 착공 준비를 완료하였고 9월 11일 C사의 공장 착공식 이후 11월 2주 파이프라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순 완공되었습니다.
- C사는 LNG 공급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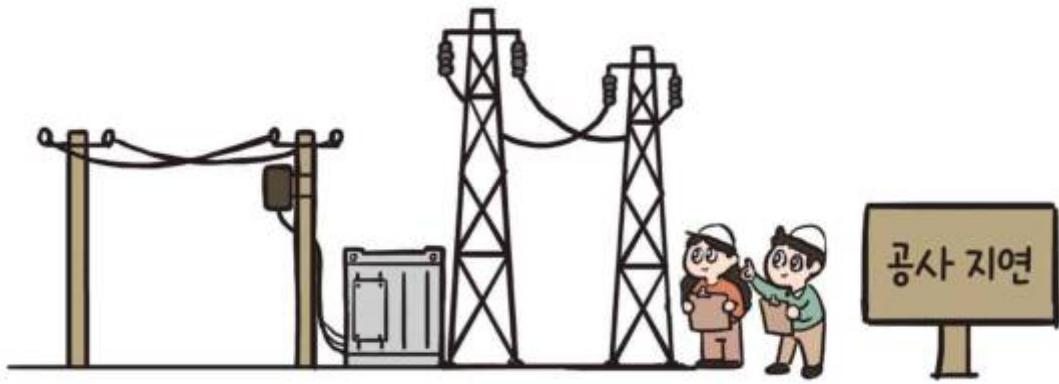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 기업인 D사는 기초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테크노 산업단지에 첨단 소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 첨단소재 생산공장은 '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일 최대 20,0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D사는 한국전력에 공장 준공 시점인 '25년 3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변전소는 현재 건설 중으로 변전소 준공이 완료되는 '26년 이전까지는 인근 변전소에서 임시로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도로 신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테크노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준공 시점에 전력공급이 어려움을 통보받은 D사는 4월 9일 산업부에 투자 애로 상황을 접수하였습니다.
- 한국전력 고객지원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한국전력이 기간별로 최대로 가능한 전력 공급량을 확인하였고 D사도 이러한 공급가능량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협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협의 결과 '25년 3월부터 8월까지는 1일 4,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이 기간에는 시제품을 생산하고 '25년 8월부터 '26년 6월까지는 1일 10,000kW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이 기간에는 제품을 양산하며 해당 지역의 변전소가 준공되는 '26년 6월 이후부터는 원래 계획했던 1일 20,000kW의 전력을 공급하여 D사의 공장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의료기기 제조 기업인 A사는 현 공장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공장부지 내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만 건축할 수 있는데 A사의 제품은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가 해당 시청 협의를 진행한 결과 “A사의 제조품이 첨단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장이 아닌 부대시설은 신·증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A사는 산업부에 공장부지 내에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3일 A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확인한 결과 A사가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에도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으로만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 첨단업종 분류 코드를 추가로 등록한 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9월 26일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A사는 노후화된 화장실, 휴게공간, 창고 등 기존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을 철거한 후 부대시설을 신·증축하고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부대시설 면적 등록 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농업회사법인인 B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식용곤충을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제품을 100% 위탁 생산하던 B사는 식품가공공장을 건축하여 직접 제조하려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가공공장 증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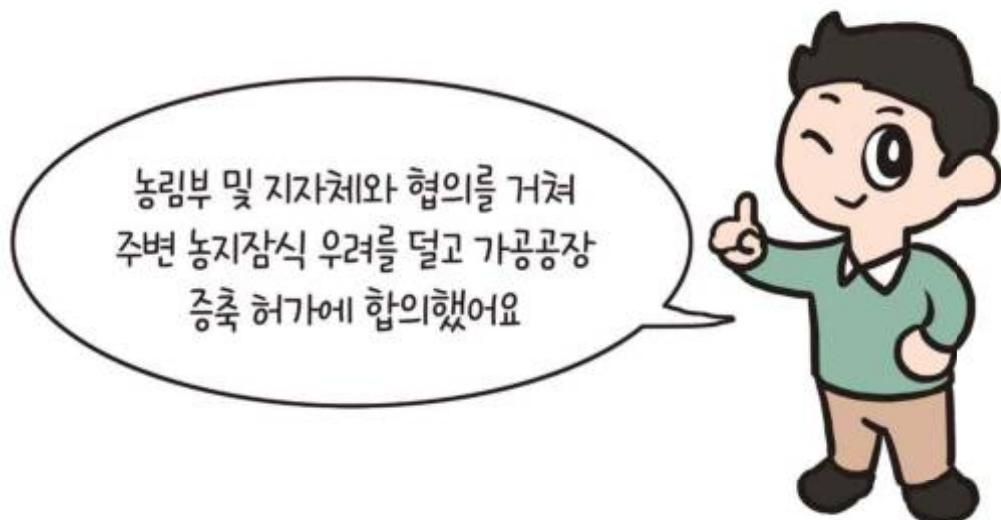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식용곤충식품 가공업의 경우, 인근 농가로의 확산 등으로 주변 농지잠식이 우려되어 지자체가 선뜻 허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이에 B사는 산업부에 미래 식품으로 유망한 식용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지자체의 허가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4월 5일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4~5월에 해당 지자체와 3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농림부 및 관할 지자체와 산업부는 곤충사역 및 가공업 허가로 인한 인근 농지의 잠식 우려 및 기존 농수산물 가공처리업과의 지원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그 결과 6월 5일 해당 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있지만 산업단지 사이에 위치하여 보존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공장 증축 허가에 합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이후에도 식품공장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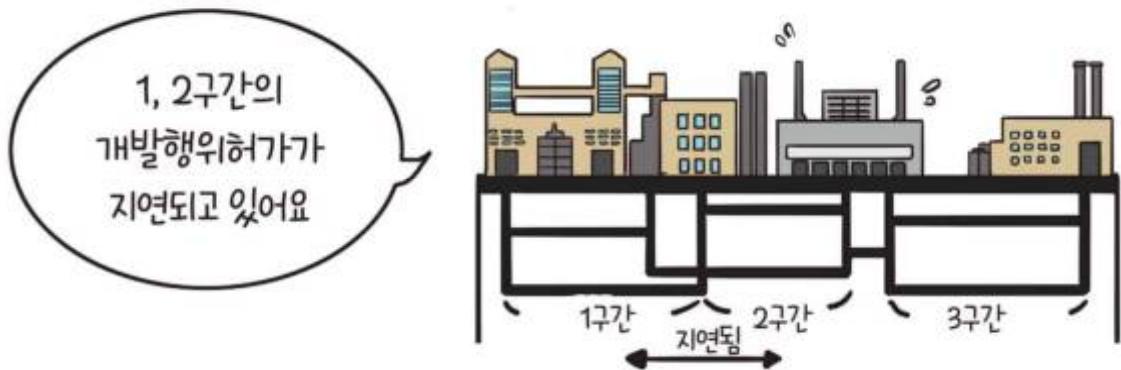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집단에너지사업자인 C사는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중으로 '25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려는 LNG 공급 배관은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구간의 경우 민원 등의 반발에 부딪쳐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배관을 설치하는데 약 1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바로 착수하지 못하면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하루 약 5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이 예상됩니다.
-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목적외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허가는 완료되었지만 1,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C사는 산업부에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8월 1일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8월 7일 한국가스공사와 LNG 배관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지자체와 진행 상황을 논의하였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수시설 조성 지원, 추가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논의, 지역업체를 활용한 공사 계약 등 다양한 방향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 그 결과 9월 19일 시청은 1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고, '25년 1월 9일 2구간의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속한 인허가 및 착공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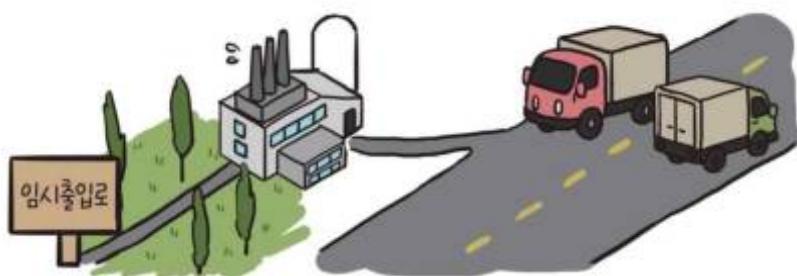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초고속변압기를 생산하는 D사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 기존 공장에 접한 주 출입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주 출입로는 큰 각종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이 항상 입출고하여 사고의 위험, 공사용 물자 출입을 위한 적재와 이동 등의 어려움이 있어 1년간 공사용 임시출입로를 확보하려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도시계획에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공원녹지법」에 따라 완충녹지에는 개별공장별로 출입로를 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D사가 원하는 임시출입로 경로는 완충녹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D사는 산업부에 1년 후 복원을 전제로 공사용 임시 출입로를 위한 녹지점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하였고 11월 27~28일 산업부는 D사와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내 녹지에 대한 진입로 점용허가의 영구성 여부를 두고 각 담당 기관간의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25년 1월 7일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청해 법령 해석 논의를 진행했고, 1월 23일 공사완료 후 완충녹지 복원을 전제로 임시출입 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숙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재정 · 세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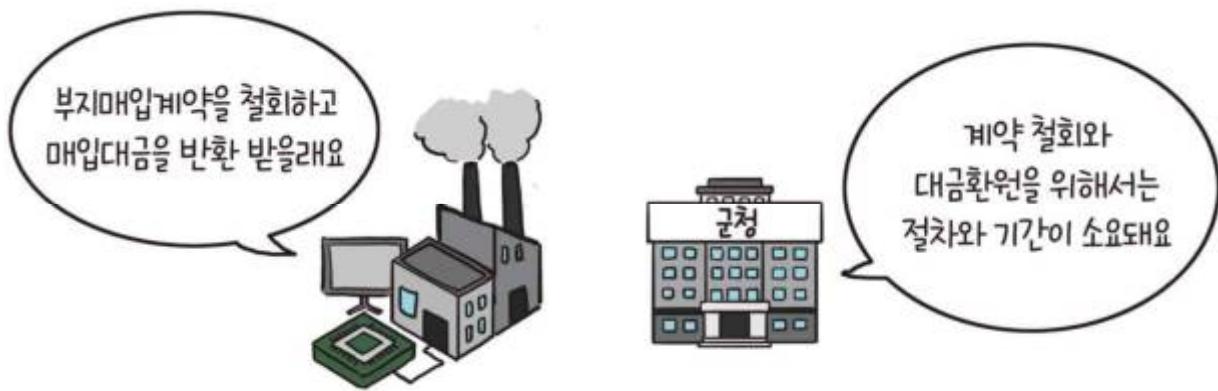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포토레지스트용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A사는 에너지 융합산업단지 내에 공장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 '20년 6월 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0월 대금을 완납하여 11월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지만 11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융합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악취배출시설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A사는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기준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입주를 포기하고 군청에 부지매입계약 철회와 납부한 매입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군청에서는 계약철회와 대금 환원을 위해서는 절차와 기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에 A사는 이미 사업추진단계에서 인건비, 건축설계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산업부에 매입 대금을 빨리 돌려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투자 애로사항 접수를 받은 산업부가 '23년 1월 12일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반환 금액 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악취방지법」 제3조 등에 근거해 빠른 환원을 건의하였고 대금 반환 약속을 확정함으로써 A사의 새로운 부지 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에 2월 2일 A사는 새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4월 25일 부지매입대금이 반환되면서 이전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 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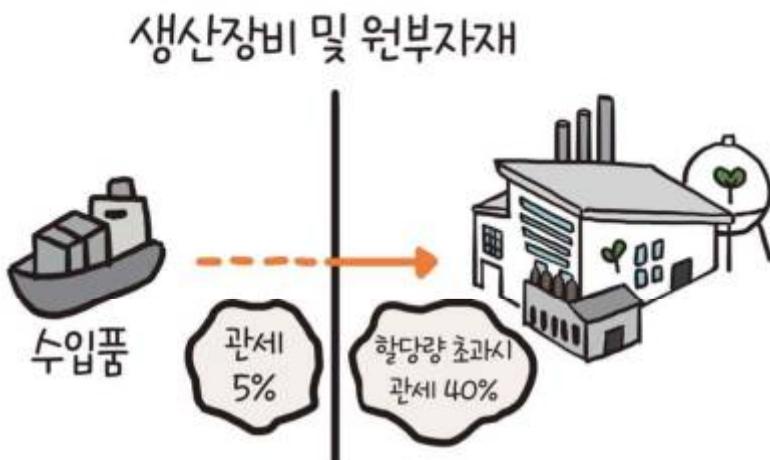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바이오의약품 생산회사인 B사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B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장비와 원부자재의 수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를 희망하지만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당시 바이오 분야 할당관세 품목은 한 개로 바이오의약품 전문생산산업 공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생산설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부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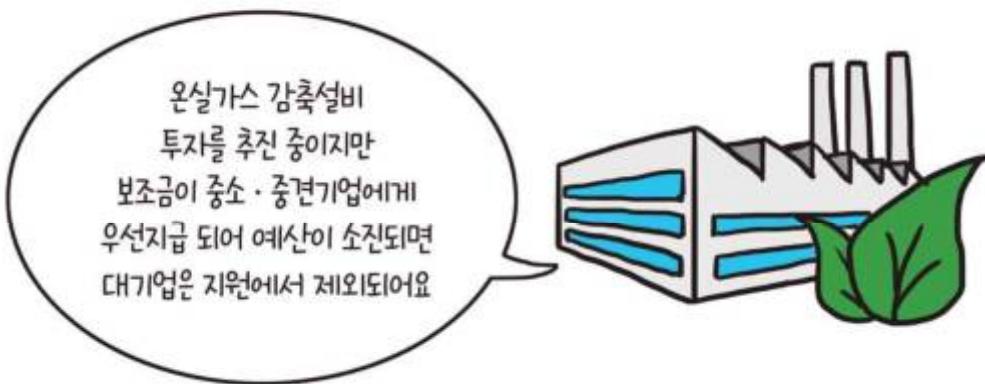
- '23년 2월 B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를 접수한 후 산업부는 2월 7일 기재부 범부처 규제혁신 TF로 과제를 송부하였습니다.
- 산업부는 B사에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품목이 무엇인지를 묻고 할당관세 품목 지정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할 때 소관 업종과를 통해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은 수입국과의 FTA 협정을 통해 관세율이 모두 0%이므로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 기업애로 발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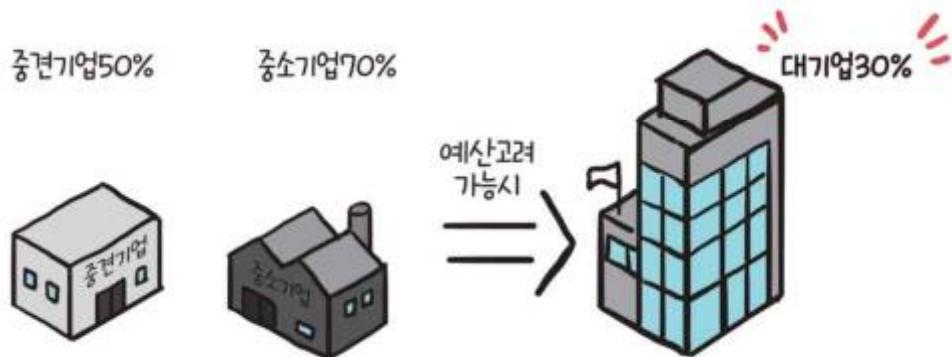
- 유통물류 회사인 C사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지급되어 정부예산이 소진되면 대기업은 지원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 특히 매년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어 기업의 감축설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23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할당 대상업체 중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예산 소진을 고려한 후 가능할 때만 공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율도 30%에 그칩니다.
- 그러므로 C사는 산업부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유도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대기업 지원금액은 별도로 분리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연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3월 C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산업부는 3월 28일 통합 물류협회에 C사 요청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 5월 4일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와 협의하여 기업 규모별 예산이 아닌 사업계획의 타당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선정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할당 대상업체의 사업 수요를 감안해 앞으로 지원사업 예산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 5월 19일 C사에 환경부 검토 의견을 전달하였고 C사는 다음 차수 사업신청 공고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 관계 법령 및 유권 해석

- 「온실가스법」 제35조(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에너지 기술 제조 기업인 D사는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사는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영국, 미국 등 관련 기술 선도 국가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난이도 높은 제조 기술을 대기업 주도로 설비를 도입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국내는 대기업에 대한 장비·설비 투자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작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D사는 산업부에 대·중·소 기업들이 공동협력하여 제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월 D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3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및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수요 대응 원천 첨단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 8월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였고 10월 기재부 협의를 거쳐 정부예산안 최종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12월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24년 신규사업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어 D사는 공동협력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E사는 세계 민항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차세대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참여 시 막대한 규모의 산업 파급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차세대 단일통로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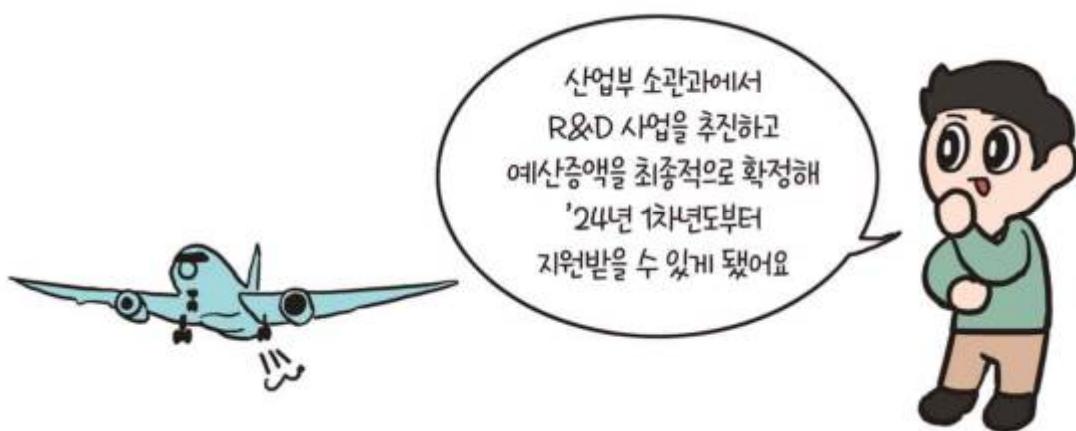
◆ 문제상황 및 이슈

- 항공기 관련 사업은 국가 기반산업으로 항공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에 E사는 산업부에 차세대 항공관련 핵심기술을 위해 R&D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산업부는 '21년 8월 E사와 협력 강화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현지 실사를 통해 추가로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산업부 소관과에서는 '23년 항공분야 R&D 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 국회 예산 증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E사는 '24년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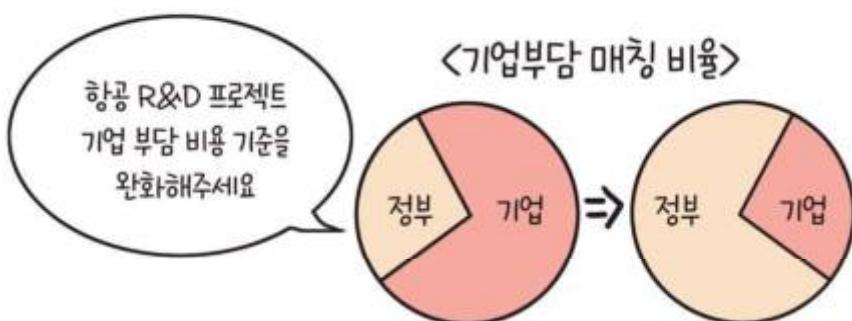
◆ 기업애로 발생 배경

- 국내 항공기 개발 기업인 F사는 기체 개발과 생산라인 구축에 '24년 8,400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항공·제조 산업의 제조, 인프라, 서비스 분야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 문제상황 및 이슈

- F사는 해외 유수의 항공기 개발사와 협력하여 자상에서 전기추진수직이착륙 시스템(eVTOL)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조 원의 개발비가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F사는 해당 분야와 연계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R&D 프로젝트에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비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경과 및 애로해소 결과

- '23년 10월 F사가 산업부에 투자 애로사항을 요청한 이후 산업부 소관과는 관련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적용 시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산업기술개발과에서는 “연구개발비의 기업분담 비율은 기재부·과기부 소관이므로 산업부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업분담 비용 중 현물 비중을 높이고 현금 비중을 낮추는 등 기업의 적극적 R&D 참여를 위해 산업기술 R&D 규정을 개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 결과 12월 26일 「산업부 R&D 관리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을 개정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민간부담금 현물, 현금 비율을 아래와 같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대기업·공기업(60% ↑ → 15% ↑), 중견기업(50% ↑ → 13% ↑), 중소기업(40% ↑ → 10% ↑)





부록



1장. 제도 개선



0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완화	8
02. 전기신사업자 등록 이후 한국전력 통한 전력 부족분 직접 공급 매개	10
03. 소규모 해체 공사인 경우 신고로 인허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12
04. SMP 상한제 조기 종료	14
05. 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교육환경평가 예외 또는 준공까지 유예	16
06. 산업입지심의회 체크리스트 중 입지기준 완화 또는 면제	18
07. 폐수 발생 전량 위탁 처리 시 산업단지 입주 제한 해제	20
08. 사업장 내 수소충전기 설치 허용 법 개정 및 안전관리규정 수립	22
09. 수소 충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수소 모빌리티 정의 추가	24
10. 규제샌드박스 통한 셀프스토리지 허용	26
11.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28
1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 다수 사업자에게 REC 분배 허용	30
13. 산업시설용지의 지구단위 규제 완화	32
14. 자원순환시설 증설 투자 시 사업부지 확장 허용	34
15.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량 확대 허용	36
16. PPA계약 조건 완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자급자족 모델 구현	38

2장. 신속 행정



01.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시 정보 공유방법 및 접근성 개선	42
02. 신축공장 진입로의 권리의무 승계 지연 대책 마련	44
03.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등급 시설 이용	46
04. 바이오기업 지원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협의체 확대 운영	48
05. 도시가스 연료 전환을 위한 LPG 공급시설 철거 요청	50
06.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시 주요 인허가 종합 처리·안내 지원	52
07. 폐기물 재활용공장 증설 시 재활용 유형 조정 허가	54
08. 산업단지 내 업종배치계획 신속 변경	56
09. 산업단지 내 공장·연구시설 신축 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58
10.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다용도 복합시설 기준 신설	60
11. 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업종 코드 명확화	62
12. 산업단지 부지 확보를 위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개선	64

3장. 인프라



01.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망, 상하수도 등 인프라 조속 확충	68
02. 경제자유구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원 체계 마련	70
03. 신축공장 가동 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LNG 공급 파이프라인 조기 구축	72
0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74

4장. 인허가



01.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 등 부대시설 신·증축 허가	78
02. 농업진흥구역 내 식용곤충 등 가공공장 증축 허가	80
03. LNG 공급 배관공사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신속 승인	82
04. 공장 증설 시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임시출입로 허가	84

5장. 재정 · 세제



01.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불가 시 대금 신속 반환	88
02. 바이오의약품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90
03.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확대 및 대기업 별도 지원	92
04. 에너지 혁신제조기술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협력 지원	94
05.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기획 및 지원	96
06. 차세대 항공 관련 핵심기술 기업부담 매칭비용 기준 완화	98



기업 투자 애로사항 접수 방법 및 해결 과정 안내

◆ 투자 애로사항 건의 작성

- 양식은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 수집된 기업 정보 및 투자 관련 사항은 문제 해결에만 이용되며 이외에는 일체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투자와 관련없는 단순 예산 등 기업 지원 민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 건의서(양식)	
기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명· 실무 담당자· 장소 (불필요시 미작성)
투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00억 원 (부지 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관련된 금액을 산정)
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로사항의 핵심을 요약하여 기입·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설명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000시 000과 00팀 (담당부처/기관이 파악된 경우 작성)
주요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까지의 규제 담당부처/기관 협의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서술

◆ 전국 상공회의소 접수처 안내

- 전국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속 및 부서	연락처	메일주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02-6050-3721	jhwayong@korcham.net
부산상공회의소 기업규제개선팀	051-990-7042	jiman@korcham.net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053-222-3066	syjang0719@korcham.net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863	soompk@incham.net
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062-350-5862	aipjh@korcham.net
대전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42-480-3022	apatheia@korcham.net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052-228-3072	research@ucci.or.kr

◆ 산업부 담당자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애로사항 해소

- 접수된 투자 애로사항은 산업부 소관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관련 기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민신문고 등 일반적인 민원 처리와는 달리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부, 결과 회신

- 신청기업 및 접수처 등에 진행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및 애로 해소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

발 행 일 2025년 6월

발 행 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E컨슈머

주 소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전 화 1577-0900

* 0| 책에 실린 사진과 내용의 무단 복제사용을 금하며, 사용 시 사전에 발행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

사례로 알아보는 기업 투자 애로 해결